

수원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18800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27443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3213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1880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10025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유진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4. 2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10025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4쪽 7~11행을 삭제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B가 2018. 6.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6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8. 11. 23.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추심명령이 2018. 1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6,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고, 이는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1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고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할 뿐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이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징수한 매출세액은 사업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위하여 이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B가 2018. 6. 8.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제1항)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2018년 1기 부가가치세가 확정되면 피고가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B가 같은 날 피고에게 교부한 부동산 매매계약금 영수증에도 계약금 2억 6,4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은 2018년 1기(2018. 7. 25.) 부가가치세가 확정되면 피고가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B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여부 등 재정상태를 조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온전히 납부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직접 납부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2억 4,000만 원을 피고가 납부하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B는 2018. 6. 15. 피고로부터 잔금 5억 973만 원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가 2018. 7. 20.경에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B와 피고가 원고의 추심권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는 2018. 7. 20.경 주식회사 H에서 액면금 2억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후 같은 달 23. B의 경리담당 직원 J과 동안양 세무서를 방문하여 B의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2억 4,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B는 당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나머지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홍, 판사 장지용, 판사 이봉락